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5호 2009. 11. 04.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09-150호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09-696호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2
- 정선군공고 제2009-698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3
- 정선군공고 제2009-699호 정선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공고..... 4
- 정선군공고 제2009-701호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 시행 공고.....5
- 정선군공고 제2009-704호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공시송달..... 6
- 정선군공고 제2009-707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공시송달.....8
- 정선군공고 제2009-710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3차 공고...9
- 정선군공고 제2009-712호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정선군공고 제2009-713호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09-150호

200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9. 10. 30.

정 선 군 수

1. 2009년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고시

가. 고시(가격)기준일 : 2009년 7월 1일 기준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844필지

다. 고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2)당 가격(원)(필지별 내역 “별첨”)

라. 고시방법 : 고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09. 11. 1 ~ 2009. 11.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033-560-2455, 22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96호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09년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0.

정 선 군 수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1. 설치목적

- 주요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에 대한 예방과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설치내용

가. 설치내역 : 3개소/3대

나. 설치 예정지역

연 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1	고한읍 고한리(421지방도 상갈래 100r지점)	차량번호인식
2	고한읍 고한 중고등학교 앞	생활방범
3	고한읍 고한7리(소두문동)	생활방범

3. 예고기간 : 2009년 10월 20일 ~ 2009년 11월 9일

4. 의견진술

- 위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 11. 9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자치행정과, ☎560-2232)에게 서면제출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자치행정과(☎560-2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09-698호

수용재결신청 열람 공고

원주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평창~정선간(3공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정선군청 건설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용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 붙임

- 가.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나. 사 업 명 :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
- 다. 공고 및 열람기간 : 2009. 10. 26 ~ 11. 09(15일간)
- 라.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정선군 건설도시과

2. 공고내용

- 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평창~정선간 도로건설공사(3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나. 수용재결신청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본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원주국토관리청 보상과 033-749-8246, 정선군 건설도시과 도로관리팀 033-560-2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용신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홈페이지 참고). 끝.

2009. 10. 23.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699호

정선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공고

정선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09. 10. 27.

정 선 군 수

1. 공청회 개최 목적

가. 우리군의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재해위험도를 분석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나.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09년 11월 10일(화) 14:00~

나. 장 소 : 정선군청대회의실(별관2층)

3.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주요 내용

가. 풍수해 관련 일반현황

나. 풍수해 관련 취약성 조사 및 재해위험도 분석

다.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라. 풍수해 저감지구 정비계획

4. 도면은 게재생략하며 공람 장소에 비치

5.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청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정선군청재난안전관리과, 각읍.면사무소

7. 관계자료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후에도 열람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 정선군청 재난안전관리과 (033-560-2162)

정선군공고 제2009-701호

2009년도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 시행 공고

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0. 26.

정 선 군 수

□ 공고기간 : 2009. 10. 26 ~ 11. 14(20일)

□ 예방접종의 종류 :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 및 접종시기

구 분	접종시기	비 고
▪의료 종사자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 요원 등	10월27일~ 11월	-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 - 거점 병원 및 약국 종사자 - 기타 병의원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 - 방역요원 등 대응요원 - 보건소검역소, 119구급대 및 경찰(잔의경 포함) 등 - 돼지 사육, 양계업 종사자
▪초중고 학생	11월16일~	▪초등, 중등, 고등학생 및 보건교사
▪영유아,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09년12월~ 10년1월	▪임신부, 영유아(6개월~만6세) ▪65세이상 건강노인 ▪만성질환자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영아보육시설 종사자 등
▪군인	10년1월~	▪군인

□ 예방접종기관 및 비용부담

- 학생, 노인, 방역요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 : 보건소 (무료접종)
 - 학생은 보건소 학교예방접종팀이 학교를 방문하여 접종
 - * 본인 의사에 따라 의료기관 접종가능(접종비용은 본인부담)
-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 위탁의료기관 (백신 무상공급, 접종비 본인부담)
 - * 만성질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접종안내문 발송
 - * 치료받는 병·의원이나, 가까운 의원에 예약 후 접종

정선군공고 제2009-704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를 등록하고자 예고서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 10. 28.

정 선 군 수

1. 서류의 명칭 :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등록예고서
2. 공고기간 : 2009. 10. 29 ~ 11. 11(14일간)
3. 대 상 자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대호피앤디 외 8인(내역별첨)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등록을 위한 예고서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5. 기타사항
 - 납세자께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2009. 11.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됨을 예고하오며, 납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군 세무회계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도 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 033) 560-2293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공시송달 내역서

연번	납세자명	체납건수	주소	대표세목	반송사유
계		43			
1	대호피앤디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취득세(부동산)	이사감
2	정진종합건설	4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신길동	주인세(특별징수)	폐문부재
3	신동익	3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금곡동	취득세(부동산)	폐문부재
4	김영주	7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취득세(부동산)	폐문부재
5	이창선	5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취득세(부동산)	수취인불명
6	오정석	3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취득세(부동산)	폐문부재
7	김예순	4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재산세(토지)	수취인불명
8	김용성	12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취득세(부동산)	이사감
9	김종택	3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동	취득세(부동산)	수취인불명

정선군공고 제2009-7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통지
2. 공고기간 : 2009. 10. 29. ~ 2009. 11. 13.(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행위	위반일자	금 액	공시송달
전연희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종량제 봉투 미사용	2009.08.23	100,000	수취인 불명

4. 공시송달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9년 11월 13일까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에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게 되며 납부기일 1개월을 경과 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간)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귀하의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선군청 환경산림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 지방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 환경산림과(☎033-560-2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29.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09-710호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공개모집 제3차 공고

우리군 소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가 폐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1세기 제1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그 활용방안에 대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코자 합니다. 공모하여 주신 우수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시는 모든분(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 11. 2.

정 선 군 수

1. 공모기간 : 2009. 11. 2. ~ 2009. 12. 30.
2. 제안자격 :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등
3. 공모내용(범위 및 내용)

가. 시설현황

- 부지 : 북평리 332-1번지 일원 59,113㎡
- 건물 : 본관 및 학습관외 6동 7,834.4㎡

나. 공모방법 : 자유제안

- (1) 정선캠퍼스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방안
-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
- (3)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용방안

4. 응모방법 : 방문상담, 우편 등

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설명자료(PPT) 1부.
- (2) 필요시 도안, 사진 등 보충 자료
- (3) **부지매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나. 접 수

- (1) 방 문 :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 (2) 우 편 : 233-70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정선군청 산업경제과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제안담당자 앞(☎033-560-2432, 2240)

5. 공모심사

가. 심사기준

1) 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성
- 년차별 투자계획

2) 사업 관리운영 계획의 신뢰성

- 사업관리능력
- 시설운영계획

3)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자기자본조달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예비재원 조달계획

4) 지역경제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지역사회 지원계획

나. 심사방법

- (1) 활용방안 평가위원회(정선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심사
- (2) 평가기준에 의한 배점평가

다. 결과통보 : 심의 확정후 통보(순위별)

6. 특전

가. 활용방안 확정에 따른 사업추진시 사업우선권자로 지정

나. 접근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지원

7. 재산권 협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 또는 매각

8. 기타 권리승계사항 등

가. 공모된 공모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택된 안에 대한 제반권리는 정선군에 귀속됩니다.

붙임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한국폴리텍III대학 정선캠퍼스 활용방안 평가항목 및 기준

활용방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비고
개발사업계획	○ 개발사업 구상의 적정성 -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기본계획과의 적정성 - 계획의 참신성, 사업의 가능성	
	○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 - 환경영향 저감방안 - 환경오염방지계획 - 자연환경과의 조화여부	
	○ 년차별 투자계획 - 투자계획과 공정비율의 정확도	
사업관리운영계획	○ 사업관리 능력 - 해당사업 참여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관리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향후 발전계획, 의지	
	○ 시설운영계획 - 운영방법 - 환경관리 계획	
재원조달능력	○ 신청자의 능력 - 신청자(법인)의 재무 상태 - 법인의 경우(전체 출자자의 재무상태) - 지역주민 및 지역법인 참여 비율	
	○ 자기자본 조달계획 - 총투자비 중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조달의 확실성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비 고
재원 조달 능력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획 (타인자본 조달시 계획) - 자금차입의 확실성	
	○ 사업대상지의 확보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확보 계획 -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 임대료 납부여부	
	○ 예비재원 조달 계획 - 예비재원 확보비율 - 출자자의 추가 부담 능력	
지역 경제 기여도	○ 지역주민 지원 - 총 고용인원, 지역주민 고용계획 - 지역상품 구매계획	
	○ 지역사회 지원계획 -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공사 도급계획 - 당해사업외 지역내 투자계획 -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정선군공고 제2009-712호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0. 3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방세 개별감면조례가 2009. 12. 31. 일괄적으로 일몰 계획이었으나,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가 조정(당초 2010년 ⇒변경 2011년) 되고 『지방세특별제한법』이 2011년 시행됨에 따라,
- 지방세 분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군세 감면조례 기간을 연장(당초 2009. 12. 31 ⇒ 변경 2010. 12. 31)하고, 2010년도 전국공통 표준조례안에 의거 감면규정 축소등 『정선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납세자 세부담 경감을 통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 폐지

- 주민 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등에 관한 감면(조례 제14조)

나.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없는 조례 폐지

- 주차장전용 건축물 및 토지등에 대한 감면(조례 제16조, 제17조)
-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 제24조)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조례 제25조)
-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 (조례 제30조)

다. 『지방세법』으로 이관예정인 조례 폐지

-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제7조의 2)

라.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제15조)
-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 제18조)
 -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중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감면규정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한다.

제4조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6조 중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를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삭제한다.

제13조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를 “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은 제외한다)” 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선군세감면 신청서” 를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감면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선군공고 제2009-713호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 10. 30.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개별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와 자체사무에 의거 각종 제증명등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 및 폐지에 맞춰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코자함.

3. 주요내용

가. 농수산 관계

- 『비료관리법』이 지난 2008년('08. 02. 09 법률제8852호) 개정되었고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중 비료생산업 등록 사항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시 '강원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로 납부토록 변경(법 제11조 제5항)

나. 관광문화 관계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중 '2. 보건사회 관계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는 삭제후 '7. 관광문화관계업무'로 이전,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 "호텔업·콘도미니엄업 신고, 호텔업·콘도미니엄업 변경신고"란은 폐지
-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유원시설업'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종합유원시설업' 변경신고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나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가 누락됨에 따라 수수료 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화상

영관' 등록(변경등록)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나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가 누락됨에 따라 수수료 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 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었으나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수수료가 누락되어 수수료 제정

다. 건설관계

-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중 '도로부지 점용 허가신청' 수수료가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징수기준 변경

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수수료 인상 : 11항목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공유재산대부(신규,계속)신청, 공장등록증명,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개인,법인), 의료기관개설(허가), 의료기관개설 신고(허가)사항변경신청
- 수수료 폐지(3개항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2010. 01. 01부터)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강원도 고유사무)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강원도 고유사무)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증명> 제8호의 공장등록증명란, 제15호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임야 대장등본 기재분포함)란 및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장등록 증명	1통	1,000원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800원	
(토지·임야대장등본 기재분포함)	1개년		
○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	연도별 1주택당	800원	

별표1 중 <증명>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1.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납세증명	1통	800원	
○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1호의 공유재산 대부신청란, 제2호의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개설신고란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 구조, 이전)란, 제6호의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란, 제11호의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공유재산 대부신청	1건	신규 5,000원 계속 3,000원	
○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원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명칭, 구조, 이전)	1건	20,000원	
○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점용허가	1건	1,000원	
○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2호의 부속의료기관개설 허가란,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란,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란,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신고란 및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변경신고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3호의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란 다음에 비료생산업 등록란 및 비료수입업 신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비료생산업 등록	1건	43,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5,000원	

별표1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제7호의 체육시설업신고, 변경신고란 다음에 종합유원시설업란, 일반유원시설업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란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종합유원시설업			
- 허 가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일반유원시설업			
- 허가 및 신고	1건	50,000원	
- 변경허가	1건	25,000원	
- 변경신고	1건	25,000원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건	30,000원	
○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변경신고)	1건	3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